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2.4.1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규정함.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적립금부족 해소를 위한 조치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
- 4) 퇴직금 IRP 지급 시 예외사항, 가입자 교육 위탁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5)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6) 모집인 보수교육 강화, 원리금보장상품 추가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의2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을 “단축시켜 그 단축된”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후단 중 “계정”을 “계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법 제13조제10의2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이항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을 “사용자는 제1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1.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년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할 것

제9조의 제목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로 한다.

제9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과 동시에 해외로 출국한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하고,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의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2. 자금운용,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관련부서의 부서장
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적립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④ 그밖에 적립금운영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적립금운용계획서 적용범위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목표수익률의 설정, 자산배분정책 수립, 투자가능상품 등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운용성과 평가, 적립금운용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부담금의 부담수준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담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부담금의 부담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단,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기로 정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 기간, 제22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간 제11조의3(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더 큰 금액 이상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부담수준으로 산정하고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제15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하고, 제16조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위원은 공단이 선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심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법 제23조의2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방법)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채신관서
-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
한 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에 대한 출자
- 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
- 9.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
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11.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2.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13.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4.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 및 결산)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제16조의5(자료의 활용 범위)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자료(개인별 월평균보수 자료 포함), 같은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의 정산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수정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정산 자료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단이 제공 받은 자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 보험료 부과자료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마.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보수액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근로자의 보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입자의 급여내역, 주소(거소), 연락처, 신분변동 및 수급권 확인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및 운영 관련 업무
2. 가입자의 퇴직 사실의 확인 및 급여 지급신청 안내
3. 법 제23조의14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위한 요건의 확인

제16조의7(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의 부담 주체)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 사용자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가입자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 가입자

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유 및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함으로

써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2.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거나 변경신고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가. 우편 발송

나. 서면 교부

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제16조의9(업무의 일부 위탁) ①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같은 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중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등록받은 자
2. 법 제23조의5제1항제5호의 업무: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및 채신관서

제16조의10(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3조의7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11(부담금 납입 방법 및 절차) ① 공단은 사용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지연이자를 납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한도)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할 수 있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등) ①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②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15(급여의 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3호 중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제16조의16(지원금의 종류, 대상 및 지원기간 등) ① 법 제23조의14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6호의 퇴직급여제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③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6조의17(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가 제16조의16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가입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의 기한 내 납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18(지원금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14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1. 법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법 제23조의14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3.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폐업한 경우

4.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④ 법 제23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제16조의19(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료, 근로소득자료)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원부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7.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6조의20(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가. 제16조의12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의14에 관한 사항

다. 제32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사목

제16조의2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① 공단은 법 제23조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3.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4. 그 밖에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주기와 기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2(시정명령) ① 법 제23조의16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기한은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 중 “연간 1천800만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제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의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수금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수금. 이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

다.

3.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일 것
제30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8조제1항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31조제2호 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를”을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공단 (이하 “퇴직연금사업자 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라목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전문기관 요건) ① 사용자는 법 제32조제2항의 교육을 전문강사를 1명이상 두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용자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방법 등)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자료 발송,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3항제2호”를 “법 제32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업무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업무”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을 “퇴직연금사업자등에게 약관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각각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품을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7조”를 “영 제17조의2”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운용역량 및 수익률 등 운용성과

2. 수수료의 적정성

3. 전담조직 및 서비스체계 구축 등 제도운영역량

4. 법 위반 사항 등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평가가 실시 되기 전에 평가기준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제7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 중 “법 제28조제2항”을 “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설정에 관한 업무

무

4. 법 제23조의14에 따른 국가의 지원 및 환수에 필요한 업무

5. 법 제23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취급실적 등의 공시에 관한 업무

6. 법 제23조의16에 따른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제10조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정규정 시행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확인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 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 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 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u>변경하여 그 변경된</u>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 우	6의2. ----- ----- ----- <u>단축시켜 그 단축된</u> ----- ----- ----- --
6의3.·7. (생 략)	6의3.·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 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 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u>
	<u>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u>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2. 3. (생략)

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

-----.

<삭 제>

1.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같음)

3. -----
 --. -----

 --.

② 법 제13조제10의2호-----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을 말한
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이 하)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① (생략)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
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재정안정화계획서”라 한다)
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
간 보존할 것

2. (생략)

3.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입

-----.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
년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
할 것

2. 사용자는 제1호에 따른 조치
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
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
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9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
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

1. ~ 3. (현행과 같음)

4.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
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
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
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
우

6.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
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
하여야 한다.

제10조(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적

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의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2. 자금운용,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관련부서의 부서장

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 (생 략)

<신 설>

③ 위원회는 적립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④ 그밖에 적립금운영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적립금운용계획서 적용범위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목표수익률의 설정, 자산배분 정책 수립, 투자가능상품 등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운용성과 평가, 적립금운용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의2(부담금의 부담수준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담수준

<신 설>

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부담금의 부담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단,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기로 정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 기간, 제22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간

제11조의3(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제11조 · 제12조 (생략)

<신설>

도의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더 큰 금액 이상을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부담 수준으로 산정하고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제12조 · 제12조의2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위원은 공단이 선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6조 (생략)
<신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의2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6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신 설>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
석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
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
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법 제23조의2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공단 직원 중에서 위
원장이 지명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16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의 운용방법) 법 제23조의3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

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

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

소기업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

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

험회사

라. 체신관서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

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

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

장에서의 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
융자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제71조제2항에 따른 벤
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벤처투
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에 대
한 출자

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
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
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
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
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에 대한 출자

9.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
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11.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신 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2.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
에 대한 투융자

13.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
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
융자

14.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
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금
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의 회계처리 및 결산) ① 공단
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
업퇴직연금기금의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을 공단의 고유자산과 구
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
계처리 및 공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자료의 활용 범위)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
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
계의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
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
신고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
별보험료의 산정 자료(개인별
월평균보수 자료 포함), 같은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의 정산 자료, 같은 법 제16조
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
1에 따른 수정신고 자료 및 같
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정
산 자료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단이
제공 받은 자료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
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마. 「소득세법」에 따른 원
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근
로소득지급명세서, 종합소
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법인세
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
서 중 보수·보수액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근로자의 보수를 확인하기

<신 설>

<신 설>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입자의 급여내역, 주소(거소), 연락처, 신분변동 및 수급권 확인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및 운영 관련 업무

2. 가입자의 퇴직 사실의 확인 및 급여 지급신청 안내

3. 법 제23조의14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위한 요건의 확인

제16조의7(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의 부담 주체)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신 설>

부담 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 사용자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가입자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 가입자

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유 및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함으로써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고용

<신 설>

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경
우

2.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거나 변경신고
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
계약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한
다.

가. 우편 발송

나. 서면 교부

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제16조의9(업무의 일부 위탁) ①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
23조의5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인
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신 설>

<신 설>

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같은 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중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등록받은 자

2. 법 제23조의5조제1항제5호의 업무: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및 체신관서

제16조의10(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3조의7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11(부담금 납입 방법 및 절차) ① 공단은 사용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지연이자를 납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부

<신 설>

담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입하여
야 한다.

제16조의12(기금제도가입자부담
금계정의 납입 한도)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자기의 부
담으로 납입할 수 있는 부담금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신 설>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
금계정의 수급요건 등) ① 기금
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제
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
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

<신 설>

<신 설>

연금기금제도”로 본다.

②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15(급여의 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2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3호 중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제16조의16(지원금의 종류, 대상 및 지원기간 등) ① 법 제23조의14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신 설>

한다.

1. 법 제2조제6호의 퇴직급여제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③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6조의17(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가 제16조의16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가입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의 기한 내 납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

<신 설>

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18(지원금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14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1. 법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법 제23조의14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3.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신 설>

시행령」에 따른 도산등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폐업한 경우

4.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
는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④ 법 제23조의14제3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3천원을 말한다.

제16조의19(요청 대상 자료의 범
위) 법 제23조의1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
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자용, 근로소득자용)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

<신 설>

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
동차 등록 원부 및 「건설기
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
물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7.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6조의20(가입자에 대한 교육사
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
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
입시기 및 납입 현황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신 설>

가. 제16조의12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의14에 관한 사항
다. 제32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사목

제16조의21(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의 공시) ① 공단은 법
제23조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 또는 사업
장의 규모, 가입자 및 적립
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
어야 한다.

나.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
야 한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
용현황 및 수익률

3.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

<신 설>

제16조의2 (생 략)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
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
외한 금액으로 연간 1천8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약서

4. 그 밖에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
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주기와 기
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2(시정명령) ① 법 제23
조의16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
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기한
은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현행 제16조의2와 같음)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 「소득세법 시행
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
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
출) ① (생 략)
② 가입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른 금액-----
-----.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
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
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

-----.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
우

2.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
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가입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
다.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
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가. ~ 다. (생략)

<신 설>

2. · 3. (생략)

<신 설>

4.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의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수금

2. · 3. (현행과 같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4. (생략)

② (생략)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 라. (생략)

<신설>

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
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
화증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
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
하는 예수금. 이 경우 증권
금융회사는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신 설>

마.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라 한다)이 등록한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

사. (현행 마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일 것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
수사항) ① 법 제31조제7항제2
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②·③ (생략)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
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
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제30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
수사항)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8조제1항제3호의 보수교
육을 받지 않고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
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

-----.

2. -----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것.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법 제13조와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제4조제6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을 말한다)에게 제공할 것.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4.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공단(이하 “퇴직연금사업자
등”이라 한다)을 ----. -----

3. -----

퇴직연금사업자등-----

-----.

4. -----

<u>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할 것</u> 5. 간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그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u>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릴 것</u>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략)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u> 마. ~ 사. (생략) 2. 3. (생략) ② (생략) <u><신설></u>	<u>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u>----- ----- ----- 5. ----- ----- ----- ----- 퇴직연금사업자등-----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 ----- ----- -----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u>----- 마. ~ 사.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32조의2(전문기관 요건) ① 사</u>
---	---

용자는 법 제32조제2항의 교육을 전문강사를 1명이상 두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용자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신 설>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에 대한 교육 방법 등) 법 제32
조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1.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
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
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
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
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
한 자료 발송, 직원연수·조회·
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 정
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
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
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u>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u> <u>나.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 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u> <u>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u> <u>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u> <u>3.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u>
제33조(사용자의 금지 행위) <u>법 제32조제3항제2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u> 가. · 나. (생략)	제33조(사용자의 금지 행위) <u>법 제32조제4항제2호</u>----- -----. 1. ----- <u>자산관리 업무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관련 업무</u>----- ----- ----- <u>퇴직연금사업자등</u>----- 가. · 나. (현행과 같음)

2. <u>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u>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u>퇴직연금사업자에게</u>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4. <u>퇴직연금사업자에게</u>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5. (생략)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	2. <u>퇴직연금사업자등에게 약관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u> ----- ----- -- 3. <u>퇴직연금사업자등</u>----- ----- ----- 4. <u>퇴직연금사업자등</u>----- ----- ----- ----- 5. (현행과 같음)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u>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품을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 ----- -----
---	---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17조, 제18조,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2.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영 제17조의2-----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운용역량 및 수익률 등 운용성과

2. 수수료의 적정성

3. 전담조직 및 서비스체계 구축 등 제도운영역량

4. 법 위반 사항 등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평가

	<u>가 실시 되기 전에 평가기준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u>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① ~ ⑥ (생략)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⑧ (생략)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7조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등(「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u>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자, 퇴직연금사업자,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28조제2항-----

-----.

1. 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23조의14에 따른 국가의 지원 및 환수에 필요한 업무
5. 법 제23조의15에 따른 중소

<u><신 설></u> <u>1. ~ 13.</u> (생 략)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취급실 적 등의 공시에 관한 업무</u> <u>6. 법 제23조의16에 따른 공단 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 한 업무</u> <u>7. ~ 19.</u> (현행 제1호부터 제13 호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557